

2021년 직거래장터(대표) 지원사업 공고

「농산물 직거래법」 및 「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」에 따라 생산자·소비자 모두에게 도움 되는 유통경로가 확산될 수 있도록 2021 농산물 바로마켓형 대표 직거래장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□ 지원개요

- 신청자격 : 관내 바로마켓 개설을 희망하는 광역자치단체
 - * 단, 사업비목 특성(민간경상보조)상 사업비 교부 및 장터 운영관리를 위해 '민간위탁기관' 필요
- 지원개소 : 광역자치단체 1개소
- 지원규모 : 1,100백만원(1년차 300, 2~5년차 연차별 200)
- 지원조건 : 국고 70%, 자부담 30%(자부담은 반드시 지방비로 충당)
- 지원내용 :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·장치(텐트, 매대, 비가림막 등)·홍보비, 교육(교류) 행사비 등

□ 사업 의무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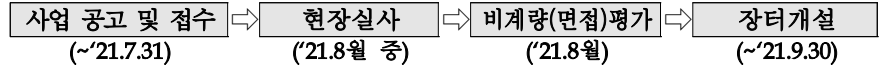
구분	의무사항
점 용 권	5년 이상 장터개설지 점용권 확보
참여규모	50농가 이상 참여
개장일수	*21년 기준 10회 이상 개최
기 타	*21.9.30이내 개장 필수

□ 신청기간 및 방법

- 신청기간 : 광역자치체가 '21.7.31까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전자공문 제출 및 바로정보(www.baroinfo.com)에 업로드
- 신청서류
 - 전자공문, 지원신청서(양식1), 사업계획서(양식2), 사업자등록증, 참여농가 명단(양식3), 참여농가별 직거래장터 참여확인서*, 지자체-운영주체 장터 위탁운영 계약서, 장터 개설지 사용허가 증빙 서류
 - * 향후 농관원의 안전성조사 등 농정에 활용예정

□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

- 농식품부, aT,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평가
- 선정절차



□ 보조금 지급 및 정산

- 선급금 : 연중 1회에 걸쳐 보조금 선지급 가능하며 사업비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
- '21.12.12.까지 인정 항목으로 지출(입금까지 완료) 및 '21.12.13.까지 관련 증빙을 첨부한 정산 신청에 대해 1차년도 배정액 내에서 정산 실시
- 사업추진기간 중 1회 이상 현장점검 및 수시로 사업추진실태 등 점검에 협조

□ 기 타

- 보조금 지원사업 부정부패척결 관리 철저(aT 감사실-22('15.1.5))
 - 보조금 부당수령 등 발생시 aT에서 해당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보조금 지원 사업자는 감사자료 제출 등 감사업무에 협조
 - 보조금 횡령 및 부당사용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 의뢰 가능
- 자세한 사업내용은 세부추진계획 참고(바로정보 www.baroinfo.com에 게시)

□ 문의처 : aT 푸드플랜부 ☎ 061-931-1029, 1026

2021. 6.

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